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5

발의연월일: 2021. 12. 6.

발 의 자:조명희·홍문표·김용판

박대수 · 성일종 · 조경태

김석기 · 추경호 · 하영제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와 같은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② (생 략)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③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	
고, 2021년 1월 1일부터 <u>2021년</u>	<u>2025년</u>
<u>12월 31일</u> 까지 취득세의 100분	12월 31일
의 75를 경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